## 산학협력정책위원회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학협력사업(이하 "협력사업"이라 한다)의 기획·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학협력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타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산학부총장, 기획정보처장, 교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산학협력단장 및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경영전략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(개정 2004, 9, 1., 2011, 9, 1., 2012, 8, 1., 2014, 9, 1., 2015, 3, 1., 2020, 6, 1.)
  - ③ 위원장은 산학부총장으로 한다.(개정 2011. 9. 1., 2012. 8. 1., 2015. 3. 1.)
- 제3조(임기)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0. 6. 24., 2018. 2. 5., 2020. 6. 1., 2022. 9. 26., 2022. 9. 26.)
  - 1. 협력사업의 기획, 개발, 조정과 방향설정
  - 2. 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대응 투자
  - 3. 협력사업의 신규 및 계속 사업 계획, 실적 평가
  - 4. 협력사업 시행기관(센터 등) 지정 신청 또는 신설 계획의 타당성
  - 5. 산업교육을 위한 특별과정과 직업교육훈련과정(계약학과) 설치
  - 6. 협력연구소 유치
  - 7. 학교기업 설치와 운영
  - 8.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
  - 9. 협력사업 관련 규정의 제정
  - 10.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협력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소위원회 등)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특별사업팀을 둘수 있다.
- 제7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산학협력총괄실에서 담당한다.(개정 2004. 4. 1., 2010. 6. 24., 2011. 9. 1., 2012. 8. 1.)

## 부칙

- 1.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5.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6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8.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직위 명칭변경)
- 9.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10.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1.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